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헌법재판관의 자격요건 강화 〉

■ 김승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723호)

2025.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이 은 정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헌법재판관의 자격요건 강화	3
2. 관계기관 의견	15

I .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승수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3. 7.

(3) 회 부 일 : 2025. 3. 10.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재판관의 공무담임권보다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더 중하므로,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헌법재판관에게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있음.

이에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그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Ⅲ. 검토의견

1. 헌법재판관의 자격요건 강화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헌법재판관 결격사유 중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의 결격 기간을 5년으로(안 제5조제2항제4호),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의 결격 기간을 10년으로(안 제5조제2항제5호),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의 결격 기간을 5년으로 각각 연장하는 내용임(안 제5조제2항제6호).

현행	개정안
제5조(재판관의 자격)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1. ~ 3. (생략) 4.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	제5조(재판관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현행	개정안
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③ (생략)	-----5년----- 5. ----- -----10년----- 6. ----- -----5년----- ③ (현행과 같음)

나. 현행법상 헌법재판관 및 법관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

헌법재판관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고(헌법 제111조제2항)¹⁾, 정무직으로 하되, 그 대우와 보수는 대법관의 예에 따르는바(「헌법재판소법」 제15조)²⁾,

헌법재판관은 ①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②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변호사의 자격이 있

1)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2) 「헌법재판소법」 제15조(헌법재판소장 등의 대우) 헌법재판소장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원장의 예에 따르며, 재판관은 정무직(政務職)으로 하고 그 대우와 보수는 대법관의 예에 따른다.

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이거나 둘 이상의 직을 합산하여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라는 자격 요건을 가질 것이 요구되고(「헌법재판소법」 제5조제1항)³⁾,

i)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ii)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iii)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iv)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v)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vi)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헌법재판관이 될 수 없음(「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⁴⁾.

3) 「헌법재판소법」 제5조(재판관의 자격) ①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4) 「헌법재판소법」 제5조(재판관의 자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③ 제2항제6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한편, 현행법상 대법관은 ①판사·검사·변호사로 20년 이상 그 직에 있었던 사람, ②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③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20년 이상 재직 한 사람이라는 자격 요건을 가질 것이 요구되고(「법원조직법」 제42조)⁵⁾,

i)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ii)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iii)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iv)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v)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⁶⁾, vi)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vii)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

5) 「법원조직법」 제42조(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한 사람

② 판사는 5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이 경우 2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특정 재판사무만을 담당하는 판사를 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④ 판사의 임용에는 성별, 연령, 법조경력, 종류 및 기간, 전문분야 등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⑤ 법원행정처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판사 임용 과정과 결과 및 임용제도 개선 상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다만, 헌법재판소는 2024년 7월 18일 제43조 제1항 제5호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였음.

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법관이 될 수 없음(「법원조직법」 제43조)⁷⁾.

< 헌법재판관 및 법관의 결격사유 >

헌법재판관 결격사유(헌법재판소법)	법관 결격사유(법원조직법)
제5조(재판관의 자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4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단순위헌, 2021헌마460, 2024.7.18. 법원조직법(2020. 3. 24. 법률 제17125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 제5호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7) 「법원조직법」 제4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② 제1항제7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다. 검토의견

개정안은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함에 개정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우선, 개정안 제5조제2항제4호는 헌법재판관 결격사유 중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의 결격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인바,

최근 헌법재판소가 「법원조직법」 제43조제1항제5호(과거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 사유로 규정)에 대하여 공무담임권 침해 를 이유로 위헌결정을 한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헌법재판관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제2항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고,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헌법재판관의 결격사유는 「법원조직법」 제43조에 따른 법관의 결격사유와 유사한바,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동일한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과거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한 「법원조직법」 제43조제1항제5호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공무담임 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 독립에 긴밀한 연관성이 없는 경우까지 과도하게 공직 취임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반

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바 있음(헌법재판소 2024. 7. 18. 선고 2021헌마460결정).

[헌법재판소 2024. 7. 18. 선고 2021헌마460결정]

「법원조직법」 제43조제1항제5호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은 당파적 이해관계로 재판의 독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당파적 이해관계로 재판의 독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임용시점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내에 당원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용에서 배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들 법관 임용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것은 당원 경력이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상당한 억지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심판대상조항은 과거 3년 이내에 당원 경력이 있으면 법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없고 재판의 독립이 침해될 것이라는 추론 내지 추단에 근거한다. 그러나 탈당 등으로 법관 임용 시점에 당원 신분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3년 이내에 당원 경력이 있었다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없고 재판의 독립이 침해될 것이라는 논리필요적 근거는 발견되지 아니한다. (중간 생략) 공무원 신분 취득 전에는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하였기에 향후 법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없다는 특별한 사정도 없이, 단지 당원 신분에 관한 과거 경력만으로 향후 당파적 편향성을 가지고 재판에 임할 것이라는 예단에 근거하므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하여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던 기간 동안 정당가입의 자유마저 폭넓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규범조화적이거나 필요최소한의 제한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재판의 독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법취지에 공감하지만, 이 점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과거 3년 이내의 단순 당원 경력까지 법관 임용 결격사유에 포함시키게 되면 공무담임권이 광범위하게 제한되는 것은 물론, 장래 법관 임용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게 됨으로써 국민으로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정당가입의 자유마

저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사익 침해는 결코 가법지 않다. (중간 생략)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임용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원 경력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사람이 장래 법관으로 임용될 경우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독립을 훼손할 것이라는 논리 필연적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독립이란 공익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불확실한 공익 기여를 위하여 법관에 임용되려는 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개정안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43조제1항제5호(과거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 사유로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2021헌마460결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관 결격사유 중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의 결격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⁸⁾.

다음, 개정안 제5조제2항제5호(「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의 결격 기간을 10년으로 연장) 및 제6호(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의 결격 기간을 5년으로 연장)와 관련하여서는, 헌법재판의 성격 및

8) 참고로, 현재 우리 위원회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21헌마460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헌법재판관의 결격 사유 중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5578호)]이 발의되어 계류 중임.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 제고의 필요성 측면과 「법원조직법」상 법관 결격사유와의 형평성, 공무담임권 제한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헌법재판은 헌법을 심사기준으로 하여 국가권력행사의 합헌성 여부를 사법적으로 통제하는 국가작용으로 그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헌법재판관이 구체적인 헌법적 분쟁을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사법적 기능을 행사하나, 국회와 행정부 사이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위헌결정을 통한 위헌적 법률의 효력 제거, 위헌정당 해산, 고위공직자 파면 등을 통한 정치적 파급효과, 헌법재판의 심사기준인 헌법규범의 개방성 등에 비추어 정치적 성격을 가진 사법 기능을 수행한다고 평가됨. 따라서 헌법재판의 성격에 비추어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은 필수적으로 요구됨⁹⁾.

한편, 헌법재판소 2024. 7. 18. 선고 2021헌마460결정에서는 법관의 임명과정에 정치적 관여가 있는지 여부(「대한민국 헌법」 제104조)¹⁰⁾, 결격사유가 개별사건의 판결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치더라도 심급제도를 통해 상급심 재판으로 해소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통해 일반 판사와 대법원장·대법관의 기본권 제한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다는 일부 위헌의견이 제시되었는바¹¹⁾,

9)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주석 헌법재판소법』, 10-16면, 142-143면 참조.

10)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11) 헌법재판소 2024. 7. 18. 선고 2021헌마460결정 -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의 일부위헌의견

“공정한 재판은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서 출발하므로, 입법자로서는 그 독립성과 중립성에 영향을

헌법재판관 또한 임명 과정에 정치적 관여를 받고(「대한민국 헌법」 제111조)¹²⁾, 그 결정에 상급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것은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 및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 측면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①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112조제2항¹³⁾ 및 「헌법재판소법」 제9조¹⁴⁾에서는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미칠 것으로 추단되는 경우에 일정 범위를 정하여 법률로 법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는 법관에는 대법원장·대법관·판사가 모두 포함되는데, 대법원장·대법관과 달리 판사의 경우에는 그 임명 과정에 정치적 관여가 없고, 가사 판사가 과거 당원 경력으로 개별사건의 판결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치더라도 이는 심급제도를 통해 상급심 재판으로 해소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과거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대법원장·대법관이 아닌 판사의 경우까지 그 결격사유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제한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중 ‘판사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대법원은 법원 조직 내에서 법적 분쟁의 최종적인 결정기관이므로, 대법원 재판을 담당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재판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의 측면에서 판사보다 더 높은 신뢰가 요구될 수밖에 없다. 유사한 취지에서, 임명 과정에 정치적 관여를 받고(헌법 제111조) 그 결정에 상급심 재판이 없는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보장을 위해 과거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을 재판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법 제5조 제2항 제4호). 그러므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과거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그 임명 과정에 정치적 관여가 없고 불공정한 재판이 심급제도를 통해 해소될 가능성이 있는 판사의 경우까지 과거 당원 경력으로 임용 결격사유를 정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제한이라 보기 어렵고, 판사에 대하여 그러한 임용 결격사유를 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이 저해된다거나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된다고 보기 어렵다.”

12)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13) 「대한민국 헌법」 제112조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14) 「헌법재판소법」 제9조(재판관의 정치 관여 금지)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마련하고 있는 점,

②국회의원 선거 등 후보자 등록 또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 당선을 위한 자문·고문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서는 「법원조직법」 제43조에 따른 법관의 결격사유 또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법관의 자격을 요건으로 하는 헌법재판관의 결격사유만 강화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점,

③개정안에서 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의 결격 기간은 10년으로,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의 결격 기간은 5년으로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있는 공무담임권은 제한되는바, 그 기간이 합리적인 범위의 제한인지 여부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관계기관 의견

법원행정처는 헌법재판관 임명 결격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은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을 제고할 필요성, 국민의 공무담임권 보장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사료되나, 「헌법재판소법」 제9조에서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등 헌법재판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점, 「법원조직법」 제43조제1항제5호 중 “당원의 신문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헌법재판소 2024. 7. 18. 선고 2021헌마460 결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058